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자 은행장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예금반환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표시의 보통예금 4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대한 예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와 피고 ◇◇◇◇ 및 소외 ◆◆◆◆는, 소외 ◆◆◆↑ 원고에게 연립주택 대를 금 3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소외 ◆◆◆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외 ◆◆◆◆의 피고 ◇◇◇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피고 ◇◇◇에게 직접 지급하되, 피고 ◇◇◇는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마쳐진 예고등기의 말소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협조의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금 20,000,000원을 원고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그가 예고등기말소에 협조하였을 경우 공동 예치한 위 돈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협조를 담보하는 뜻으로 원고도 금 20,000,000원을 함께 예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금 40,000,000원의 이 사건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하였습니다.
- 2. 원고는 피고 ◇◇◇에게 위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연립주택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마치고, 위 피고는 위 연립주택에 관한 예고등기의 말소절차도 이행하였는바, 위 피고는 위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가 금 20,000,000원을 가져가도록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 ◇ ◇ 에 대하여, 위 예금 4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 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 은행 ◆ ◆ 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 ◆ 은행에 대하여는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예금일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예금통장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 1. 통장발행은행: 주식회사 ○○은행
- 1. 예금의 종류 : 보통예금
- 1. 계 좌 번 호 : 000-00-0000
- 1. 예 금 주: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1. 개 설 일: 20 ○ . ○ .
- 1. 발 행 일: 20 ○ . ○ .
- 1. 계좌관리점 및 통장발행점 : ○○지점. 끝.

| 관형 | 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소멸시효일람표) |
|-----|-----------------------------|------------------------------|---------------------|--------------------|
| 제 🕯 | 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 |
| 田 | <u>a</u>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 |
| "' | | ·송달료 : ㅇㅇㅇ원(< | ☞적용대상사 ² | 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불분 | 복 절 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 | |
| 및 | 기 간 | • 판결서가 송달된 날 | 부터 2주 이니 | 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 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 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 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이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 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 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 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하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 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 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 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 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 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 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 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 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 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 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 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 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 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 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위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키용 판결).

기타

다31825 판결).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